

『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
 - 제명 :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→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 - 위원회명 :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
→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
-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 추가(안 제2조)
 -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
 -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-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(안 제7조)
-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(안 제8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,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세무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
 - 관련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,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추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 조항과 해촉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